



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

우609-360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33번지 / 전화(051)508-1743 / 전송(051)509-4282

문서번호 부교노 2005 - 631

시행일자 2005. 12. 26(월)

경 유

수 신 부산교통공단 이사장

참 조 경영지원처장

취 급		위 원 장	
보 존		2/2	
수석부위원장	✓		
사 무 국 장	m		
기안	총무부장 허재관		협 조

제 목 공사설립에 따른 제규정 제정(안)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

1. 노무 - 002660(2005. 12. 15), 노무 - 002732(2005. 12. 21)호와
관련입니다.

2. 위 호에 의거 공단에서 의견 제출을 요청한 공문의 내용을 살펴본 바
2006. 1. 1부로 설립되는 지방공사(부산교통공사)의 취업규칙과 관련된 사항으로
서,

3. 2006. 1. 1부로 적용하게 될 취업규칙의 제정은 근로기준법령이 규정
하는 바와 공사설치조례 및 공사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합니다.

4.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부산교통공단은 공단법폐지법률이 규정하는 바
에 의하여 2005. 12. 31부로 임기가 종료되는 관계로 새롭게 설립되는 지방공사의
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를 가지지 못합니다.

5. 공사설립에 따른 제규정 제정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는 권한 없는 공
단에서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이기에 반려를 합니다.

6. 아울러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서 원만한 공사설립이 될 수 있도록
공단에서는 공사설치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
가 근기법 제 97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 끝.

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위원장